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도892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32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과 △△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같은 과 □□팀에서 담당하던 축구선수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라 한다)를, 2024. 1. 24. 14:02경 및 2024. 1. 25. 10:36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변호사 공소외 2에게 알려줌으로써, 법령
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후, 간접증거들
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이 사
건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하였고,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순차로 위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
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
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
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등 참조).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소송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제1심은,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등 상당한 심리를 거쳐, 피고인 및 공소외 2 모두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 받을 동기나 목적이 분명치 않은 점,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 공소외 2와 공소외 3 사이의 정보 누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누설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공소외 2에게 누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원심은, 제1심과 동일한 증거관계에서도 제1심과 달리 피고인·공소외 2·공소외 3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정보를 누설할 동기를 어느 정도 추단할 수 있는 점, 공소외 3이 유출한 정보의 내용과 모두 관련된 사람은 오직 피고인뿐인 점,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 누설 무렵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 순서의 인터넷사용기록, 통화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공소외 2에게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공소외 2에게 누설하였는지를 추단케 하는 각종 증거들에 관한 증거가치 평가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은 상반된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공소외 2에게 누설한 사실, 공소외 2가 다시 이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인물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모두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각 증언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2, 공소외 2와 공소외 3 사이의 각 친분 관계 등만으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2의 정보 누설·전달의 동기나 목적이 뚜렷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상호 사용시간이 중복되는 인터넷사용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시각에 이들 사이에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공소외 2와 공소외 3 사이에 일반 전화통화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 '함께 가기로 한 미국 여행(2024. 1. 25. 저녁 출국)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일부 자료도 제출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위 내용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공소외 2, 공소외 3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심으로서 공소외 2와의 관계, 피고인의 인터넷사용기록 내역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

 대법관 천대엽 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